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A56블럭) 1회차 입주자모집공고



* (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 2023.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처분서약 여부와 관계 없이 [1주택 소유(주택처분서약)]로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존주택 처분서약 관련 청약용 시스템 개편은 2023.05.01까지 완료 예정).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주택기금과(2013.9.11)에서 시행하는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에 따르며, 총 2회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는 총 2회차 분양 중, 1회차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회차」 화성시 주택과 - 5089호(2023.02.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1회차(437세대) : 3901동, 3902동, 3903동, 3904동, 3905동, 3906동, 3907동 / 2회차(363세대) : 3908동, 3909동, 3910동, 3911동, 3912동, 3913동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1회차 분양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2회차 공급대상과 분양가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시행하는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에 따라 게시한 것이며, 2회차 분양분은 2회차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 본 아파트는 2회에 걸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각각 받으며, 사용검사 및 착공·입주의 경우 차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분양가, 계약일자, 중도금 일자 등은 차수에 따라 상이하거나 차수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주택전시관 운영 안내 사항

-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이버주택전시관(<http://www.elife.co.kr>)운영과 방문관람으로 병행 운영 (2023.03.03.(금)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확진자 등은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가능 시간 내 방문 시 비접촉제온측정 온도가 37.5도가 넘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 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주택전시관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전시관 운영,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관람,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화성동탄2) A-56BL) 주택전시관 내 분양상담 전화(1522-7002),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청약 콜센터는 청약용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나 고객 상담 과정에서 개인의 다양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한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3.02(목)입니다. (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외지구 및 비청약과외지역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 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여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외지구 및 비청약과외지역의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용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외지구 및 청약과외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2)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기타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2)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2.03.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2.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화성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화성시 동탄2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비투기과외지구 및 비청약과외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애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1)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모, 장인, 장모, 사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관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계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 있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신청 제한 등)을 받으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요건	-	필요	-	-
소득기준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및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청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배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용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처 격당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예비당첨자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최초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므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나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자 주택처분의무 폐지(예정)안내
-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주택 소유자 중 기존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서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현행방식을 폐지할 예정이오니 1주택 소유 청약자는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보고」(1.3) 및 주택금융과-172(2023.01.04.)호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폐지하고 기존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 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용 개편 전까지 1주택 소유자는 모두 [1주택 소유자(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하실 경우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선정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괴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수도권내 공급 주택은 300%)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조정대상지역 화성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인입증명서 여부, 입주 예정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중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인지세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불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증여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거주무기기간, 재당첨 제한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8년 단,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거, 향후 2023년 3월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 시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일(단,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소급 적용 될 예정이나, 반드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법규 개정과정에서 보도자료 내용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제4호차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3.03.21)부터 8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무기기간 : 본 아파트 「주택법」 제57조의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봄)
- 해당주택 제한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정약과열지역의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해당주택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당주택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주택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해당주택이 제한됩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차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제65조제1항을 위반한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으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각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으로 의심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3년 03월 13일(월)	2023년 03월 14일(화)	2023년 03월 15일(수)	2023년 03월 21일(화)	2023 03 23(목) ~ 04 01(토)	2023년 04 03(월) ~ 06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주택전시관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 * 고려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1차 1회」 경기도 화성시 주택과 - 5089호(2023.02.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A-56블럭)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층 13개동, 총 800세대 중 「1회차 437세대(특별공급 57세대 포함)」 「2회차 363세대 (특별공급 47세대 포함)」
[특별공급 104세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세대 포함)] 및 부대부리시설
- 차수별 분양시기 : 1회차 437세대 : 2023.03.02 분양 / 2회차 363세대 : 2023.08 분양예정(2회차의 분양시기는 사업주체의 사정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전체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계		
민영 주택	01	099.9666A	99A	99.9666	25.5757	125.5423	71.5393	197.0816	94.3814	271	28	8	36	235	16
	02	099.9869B	99B	99.9869	27.2360	127.2229	71.5538	198.7767	94.4006	163	17	4	21	142	10
	03	099.9981C	99C	99.9981	26.5724	126.5705	71.5619	198.1324	94.4112	186	19	6	25	161	14
	04	099.9757D	99D	99.9757	26.0166	125.9923	71.5458	197.5381	94.3901	36	4	1	5	31	3
	05	099.9804E	99E	99.9804	26.4929	126.4733	71.5492	198.0225	94.3946	36	4	1	5	31	3
	06	099.9666F	99F	99.9666	25.5757	125.5423	71.5393	197.0816	94.3816	8	0	0	0	8	0
	07	099.9869G	99G	99.9869	27.2360	127.2229	71.5538	198.7767	94.4008	4	0	0	0	4	0
	08	099.9981H	99H	99.9981	26.5724	126.5705	71.5619	198.1324	94.4113	2	0	0	0	2	0
	09	115.9379A	115A	115.9379	28.9827	144.9206	82.9689	227.8895	109.4605	46	4	2	6	40	4
	10	115.9570B	115B	115.9570	29.5801	145.5371	82.9825	228.5196	109.4786	48	4	2	6	42	4
합계										800	80	24	104	696	54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순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비율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순정리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하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99D	3902동 4호	1층	1	265,726,955	261,904,586	26,190,459	553,822,000	10,000,000	45,382,200	55,382,200	55,382,200	55,382,200	55,382,200	55,382,200	166,146,600	
		2층	1	265,726,955	267,204,586	26,720,459	559,652,000	10,000,000	45,965,200	55,965,200	55,965,200	55,965,200	55,965,200	55,965,200	55,965,200	167,886,600
		3층	1	265,726,955	272,504,586	27,250,459	565,482,000	10,000,000	46,548,200	56,548,200	56,548,200	56,548,200	56,548,200	56,548,200	56,548,200	169,644,600
		4층	1	265,726,955	277,803,677	27,780,368	571,311,000	10,000,000	47,131,100	57,131,100	57,131,100	57,131,100	57,131,100	57,131,100	57,131,100	171,393,300
		5-9층	5	265,726,955	283,103,677	28,310,368	577,141,000	10,000,000	47,714,100	57,714,100	57,714,100	57,714,100	57,714,100	57,714,100	57,714,100	173,142,300
		10층 이상	3	265,726,955	285,753,677	28,575,368	580,056,000	10,000,000	48,005,600	58,005,600	58,005,600	58,005,600	58,005,600	58,005,600	58,005,600	174,016,800
99E	3902동 1호	1층	1	265,739,623	263,815,797	26,381,580	555,937,000	10,000,000	45,593,700	55,593,700	55,593,700	55,593,700	55,593,700	55,593,700	166,781,100	
		2층	1	265,739,623	269,135,797	26,913,580	561,789,000	10,000,000	46,178,900	56,178,900	56,178,900	56,178,900	56,178,900	56,178,900	168,536,700	
		3층	1	265,739,623	274,455,797	27,445,580	567,641,000	10,000,000	46,764,100	56,764,100	56,764,100	56,764,100	56,764,100	56,764,100	170,292,300	
		4층	1	265,739,623	279,775,797	27,775,580	573,493,000	10,000,000	47,349,300	57,349,300	57,349,300	57,349,300	57,349,300	57,349,300	172,047,900	
		5-9층	5	265,739,623	285,095,797	28,509,580	579,345,000	10,000,000	47,934,500	57,934,500	57,934,500	57,934,500	57,934,500	57,934,500	57,934,500	173,803,500
		10층 이상	3	265,739,623	287,755,797	28,775,580	582,271,000	10,000,000	48,227,100	58,227,100	58,227,100	58,227,100	58,227,100	58,227,100	58,227,100	174,681,300
99F	3901동2호 3903동1호 3904동2호	1층	4	265,703,025	286,532,705	28,653,270	580,889,000	10,000,000	48,088,900	58,088,900	58,088,900	58,088,900	58,088,900	58,088,900	174,266,700	
		1층	1	265,703,025	283,891,796	28,389,179	577,984,000	10,000,000	47,798,400	57,798,400	57,798,400	57,798,400	57,798,400	57,798,400	173,395,200	
99G	3901동1호 3903동1호 3904동1호	1층	3	265,757,077	282,849,930	28,284,993	576,892,000	10,000,000	47,689,200	57,689,200	57,689,200	57,689,200	57,689,200	57,689,200	173,067,600	
		1층	1	265,757,077	280,173,566	28,017,357	573,948,000	10,000,000	47,394,800	57,394,800	57,394,800	57,394,800	57,394,800	57,394,800	172,184,400	
99H	3901동4호 3907동2호	1층	2	265,786,637	280,133,057	28,013,306	573,933,000	10,000,000	47,393,300	57,393,300	57,393,300	57,393,300	57,393,300	57,393,300	172,179,900	
115A	3904동 5호	1층	1	308,153,136	314,214,422	31,421,442	653,789,000	10,000,000	55,378,900	65,378,900	65,378,900	65,378,900	65,378,900	65,378,900	196,136,700	
		2층	1	308,153,136	320,310,786	32,031,078	660,495,000	10,000,000	56,049,500	66,049,500	66,049,500	66,049,500	66,049,500	66,049,500	198,148,500	
		3층	1	308,153,136	326,406,240	32,640,624	667,200,000	10,000,000	56,720,000	66,720,000	66,720,000	66,720,000	66,720,000	66,720,000	200,160,000	
		4층	1	308,153,136	332,502,604	33,250,260	673,906,000	10,000,000	57,390,600	67,390,600	67,390,600	67,390,600	67,390,600	67,390,600	202,171,800	
		5-9층	5	308,153,136	338,598,058	33,859,806	680,611,000	10,000,000	58,061,100	68,061,100	68,061,100	68,061,100	68,061,100	68,061,100	204,183,300	
		10층 이상	3	308,153,136	341,646,240	34,164,624	683,964,000	10,000,000	58,396,400	68,396,400	68,396,400	68,396,400	68,396,400	68,396,400	205,189,200	
115B	3904동 6호	1층	1	308,204,091	304,452,645	30,445,264	643,102,000	10,000,000	54,310,200	64,310,200	64,310,200	64,310,200	64,310,200	64,310,200	192,930,600	
		2층	1	308,204,091	310,574,463	31,057,446	649,836,000	10,000,000	54,983,600	64,983,600	64,983,600	64,983,600	64,983,600	64,983,600	194,950,800	
		3층	1	308,204,091	316,696,281	31,669,628	656,570,000	10,000,000	55,657,000	65,657,000	65,657,000	65,657,000	65,657,000	65,657,000	196,971,000	
		4층	1	308,204,091	322,818,099	32,281,810	663,304,000	10,000,000	56,330,400	66,330,400	66,330,400	66,330,400	66,330,400	66,330,400	198,991,200	
		5-9층	5	308,204,091	328,939,917	32,893,992	670,038,000	10,000,000	57,003,800	67,003,800	67,003,800	67,003,800	67,003,800	67,003,800	201,011,400	
		10층 이상	3	308,204,091	332,000,826	33,200,083	673,405,000	10,000,000	57,340,500	67,340,500	67,340,500	67,340,500	67,340,500	67,340,500	202,021,500	

* 상기 회차별 청약일정을 확인 하시기, 청약신청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 회차별 평형 및 타입에 따른 분양가는 상이하므로, 각 회차별 입주자모집공고 공금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902동(102호, 202호)는 필로티 시공으로 공금세대가 없습니다.

■ 2회차 공금대상

(단위 : 세대, m)

주택 구분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가구	노부부모양	계		
민영 주택	01	099.9666A	99A	99.9666	25.5757	125.5423	71.5393	197.0816	94.3814	99	11	4	15	84	6
	02	099.9869B	99B	99.9869	27.2360	127.2229	71.5538	198.7767	94.4006	48	7	2	9	39	4
	03	099.9981C	99C	99.9981	26.5724	126.5705	71.5619	198.1324	94.4112	95	10	3	13	82	8
	04	099.9757D	99D	99.9757	26.0166	125.9923	71.5458	197.5381	94.3901	24	2	0	2	22	2
	05	099.9804E	99E	99.9804	26.4929	126.4733	71.5492	198.0225	94.3946	24	2	0	2	22	2
	06	099.9666F	99F	99.9666	25.5757	125.5423	71.5393	197.0816	94.3816	3	0	0	0	3	0
	07	115.9379A	115A	115.9379	28.9827	144.9206	82.9689	227.8895	109.4605	34	2	1	3	31	3
	08	115.9570B	115B	115.9570	29.5801	145.5371	82.9825	228.5196	109.4786	36	2	1	3	33	3
합 계										363	36	11	47	316	28

■ 2회차 공금금액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 구분(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금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99A	3910동 2,3호 3911동 4,5호 3912동 2,3호 3913동 2,3,5호	1층	4	265,702,462	299,735,035	29,973,503	595,411,000
		2층	7	265,702,462	305,015,944	30,501,594	601,220,000
		3층	9	265,702,462	310,296,853	31,029,685	607,029,000
		4층	9	265,702,462	315,577,762	31,557,776	612,838,000
		5-9층	45	265,702,462	320,858,671	32,085,867	618,647,000
		10층 이상	25	265,702,462	323,498,671	32,349,867	621,551,000
99B	3910동 1호 3911동 6호 3912동 1호 3913동 1호	1층	4	265,756,514	296,228,624	29,622,862	591,608,000
		2층	4	265,756,514	301,580,442	30,158,044	597,495,000
		3층	4	265,756,514	306,932,260	30,693,226	603,382,000
		4층	4	265,756,514	312,283,169	31,228,317	609,268,000
		5-9층	20	265,756,514	317,634,987	31,763,499	615,155,000
		10층 이상	12	265,756,514	320,310,442	32,031,044	618,098,000
99C	3910동 4호 3911동 3호 3912동 4호 3913동 4호	1층	4	265,786,355	293,444,223	29,344,422	588,575,000
		2층	4	265,786,355	298,767,859	29,876,786	594,431,000
		3층	4	265,786,355	304,091,496	30,409,149	600,287,000
		4층	4	265,786,355	309,416,041	30,941,604	606,144,000
		5-9층	20	265,786,355	314,739,677	31,473,968	612,000,000
		10층 이상	11	265,786,355	317,402,405	31,740,240	614,929,000
	3908동 2,3호 3909동 2,3호	1층	4	265,786,355	288,119,677	28,811,968	582,718,000
		2층	4	265,786,355	293,444,223	29,344,422	588,575,000
		3층	4	265,786,355	298,767,859	29,876,786	594,431,000
		4층	4	265,786,355	304,091,496	30,409,149	600,287,000



		5-9층	20	265,786,355	309,416,041	30,941,604	606,144,000
		10층 이상	12	265,786,355	312,077,859	31,207,786	609,072,000
99D	3908동 4호 3909동 4호	1층	2	265,726,955	285,753,677	28,575,368	580,056,000
		2층	2	265,726,955	291,053,677	29,105,368	585,886,000
		3층	2	265,726,955	296,352,768	29,635,277	591,715,000
		4층	2	265,726,955	301,652,768	30,165,277	597,545,000
		5-9층	10	265,726,955	306,952,768	30,695,277	603,375,000
		10층 이상	6	265,726,955	309,602,768	30,960,277	606,290,000
99E	3908동 1호 3909동 1호	1층	2	265,739,623	287,755,797	28,775,580	582,271,000
		2층	2	265,739,623	293,075,797	29,307,580	588,123,000
		3층	2	265,739,623	298,394,888	29,839,489	593,974,000
		4층	2	265,739,623	303,714,888	30,371,489	599,826,000
		5-9층	10	265,739,623	309,034,888	30,903,489	605,678,000
		10층 이상	6	265,739,623	311,694,888	31,169,489	608,604,000
99F	3910동 2호 3913동 2,3호	1층	3	265,703,025	310,296,341	31,029,634	607,029,000
115A	3910동 5호 3911동 2호 3912동 5호	1층	2	308,153,136	344,694,422	34,469,442	687,317,000
		2층	2	308,153,136	350,789,876	35,078,988	694,022,000
		3층	3	308,153,136	356,886,240	35,688,624	700,728,000
		4층	3	308,153,136	362,981,695	36,298,169	707,433,000
		5-9층	15	308,153,136	369,078,058	36,907,806	714,139,000
		10층 이상	9	308,153,136	372,126,240	37,212,624	717,492,000
115B	3910동 6호 3911동 1호 3912동 6호	1층	3	308,204,091	335,062,645	33,506,264	676,773,000
		2층	3	308,204,091	341,184,463	34,118,463	683,507,000
		3층	3	308,204,091	347,306,281	34,730,628	690,241,000
		4층	3	308,204,091	353,428,099	35,342,810	696,975,000
		5-9층	15	308,204,091	359,549,917	35,954,992	703,709,000
		10층 이상	9	308,204,091	362,610,826	36,261,083	707,076,000

* 상기 회차별 청약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 회차별 평형 및 타입에 따른 분양가는 상이하므로, 각 회차별 입주자모집공고 공급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99.9666A	099.9869B	099.9981C	099.9757D	099.9804E	099.9666F	099.9869G	099.9981H	115.9379A	115.9570B
약식표기	99A	99B	99C	99D	99E	99F	99G	99H	115A	115B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출납)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앞선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앞선조건에 충족하는 계약자에겐 대출을 앞선함)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시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축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주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한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조경시설물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회차별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1회차												2회차																					
	99A	99B	99C	99D	99E	99F	99G	99H	115A	115B	계	99A	99B	99C	99D	99E	99F	99G	99H	115A	115B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6	4	5	1	1	0	0	0	1	1	23	6	4	5	1	1	0	0	0	1	1	19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수도권 거주자(50%)												5	3	5	1	1	0	0	0	1	1	21	5	3	5	1	1	0	0	0	1	1	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급세대수의 3% 범위)	4	2	3	1	1	0	0	0	1	1	13	4	2	3	0	0	0	0	0	1	1	11												
합 계	21	12	12	3	3	0	0	0	3	3	57	15	9	13	2	2	0	0	0	3	3	47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10% 이내 : 1회차 : 44세대 / 2회차 : 36세대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3% 이내 : 1회차 : 13세대 / 2회차 : 11세대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 본인인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지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 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불가, 부적격당첨자로 판리되어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타기청약과외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은 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 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 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 마감 이후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신청 시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신청 당시 청약신청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전시관에서 청약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대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이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사용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컴퓨트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44세대

■ 대상자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서류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확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경쟁이 있는 경우 확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경기도 거주자 우선공급에서 낙첨자 포함)에게 공급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확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단, 확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 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해당 지역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5명 이상 4명 3명	40 35 3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2명 1명	15 10 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5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20 15 1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15 10 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13세대

■ **대상자(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확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할 것**
- **세대주일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확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2022.03.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2.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오류에 의한 잘못일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 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2.03.02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2.09.02)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와 경쟁하며, 화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와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낙첨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50%)와 경쟁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명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합니다.
-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2017.04.03이후 모집공고일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총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에별도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용(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신청자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4) 청약신청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당시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1순위로서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3.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2

구분	화성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호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1호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5.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택('분양권등'을 포함)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만60세 이상 포함)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IV 청약 신청 일정, 장소 등

1.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3.03.13(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으로 한정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일반공급	1순위	2023.03.14(화) 09:00~17:30		
	2순위	2022.03.15(수) 09:00~17:30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용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홈Home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6:00)

-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50%;">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width:50%;">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증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준된 서명용)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증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준된 서명용)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증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준된 서명용)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자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자 날인 없이 신청(인자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03.21(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2023.04.03 ~ 04.06 (4일간,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주택전시관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회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당첨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회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용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모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3.21(화) ~ 2023.03.30(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이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3.21(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에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 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 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단지개발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정시 1년 이상 거주한 자(2022.03.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 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2.09.02)에게 20%를 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전순위 신청자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주택전시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이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 적용됩니다.

VI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1.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3.03.23(목) ~ 2023.04.01(토)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주택전시관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홈페이지(www.elife.co.kr)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2023.03.29(수) ~ 2023.04.01(토) (10:00 ~ 17:00)		
	일반공급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당첨자 발표일)부터 11일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내 주택전시관으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어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거주여



부,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자격검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확인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 참여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청약 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주택전시관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약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전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분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명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복무확인서	본인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에서 인터넷 청약한 경우 생략
	○		다자녀 배정 기준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기전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일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임신증명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
	○		임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가정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세대주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분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한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여부 추가 확인 필수 제출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분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등본은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로서 주택전시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기 구비사항 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거주기간 산정,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점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전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지 않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명서류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위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2)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거주기간 산정,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당점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명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개명할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비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2. 계약 체결 시 일정 및 구비서류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통보 후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023.04.03(월) ~ 04.06(목) 4일간 (10: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주택전시관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elife.co.kr)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300-5873-71	(주)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 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통·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3901동 0104호 홍길동 → 39010104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통·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재판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이 중 국도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가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당첨자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	추가 적격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기재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본인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주택전시관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본인 발급 당첨자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
	○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포도 : 국배거소신고증 및 국배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관련 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검류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제24호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주택 전시관에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6개월, 위촉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복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청약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 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로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분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나 전액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도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 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 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분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제7호의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 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명 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 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 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 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7.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시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선정되지 않았으며, 계약자에 한하여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대출은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하고 대출이자자는 후불제로 사업주체가 일정 비율에 한해 선납하며,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이전에 대납했던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당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은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를 비롯한 사업관계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 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시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자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알선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알선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도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자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알선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영업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보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 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가 앞선하는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은 본 아파트 공급대금 중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잔금 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잔금납부 시 은행권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VIII 발코니 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I)) 및 추가선택품목(II)

1.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20%)	잔금 (70%)
		계약 시		2023.07.14	입주지정기일
99A	3,678,000	367,800		735,600	2,574,600
99B	4,790,000	479,000		958,000	3,353,000
99C	2,928,000	292,800		585,600	2,049,600
99D	2,989,000	298,900		597,800	2,092,300
99E	4,057,000	405,700		811,400	2,839,900
99F	3,678,000	367,800		735,600	2,574,600
99G	4,790,000	479,000		958,000	3,353,000
99H	2,928,000	292,800		585,600	2,049,600
115A	3,978,000	397,800		795,600	2,784,600
115B	4,082,000	408,200		816,400	2,857,4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 납부계획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획	농협은행	301-0300-5858-61	(주)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 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 납부계획은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획과 상이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 중도금 납부일정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 : 3901동 0104호 홍길동 → 39010104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등·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시행위탁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세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납부,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변경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미선택 시 시공 및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추가선택품목(II)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미선택 시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홈페이지 내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세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선택 시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미선택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선택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형상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체에 대한 원인 규명업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미선택 시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등 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선택 시 마이너스 옵션 선택으로 인해 미설치 되는 품목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비용감소는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추가선택품목(II)

■ 추가선택품목(II)

- 추가선택품목(II)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상세내용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 위치	설치대수	제조사	판매가격	비고
99A / 99B / 99C 99D / 99E / 99F 99G / 99H	ALT1	거실+주방+침실1	3	삼성/LG	5,35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	삼성/LG	7,150,000	
	ALT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	삼성/LG	8,400,000	
115A	ALT1	거실+주방+침실1	3	삼성/LG	5,40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	삼성/LG	8,450,000	
	ALT3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7	삼성/LG	9,650,000	
115B	ALT1	거실+주방+침실1	3	삼성/LG	5,400,000	택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	삼성/LG	8,450,000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가전사별,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삼성/LG 제품 중 선택할 수 있고(삼성의 경우 무풍 에어컨만 제공) 공기정정기는 미장착된 일반형 제품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션택 시에는 일반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이 거실, 침실(알파룸 제외)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99A, 99B, 99C, 99D, 99E, 99F, 99G, 99H타입의 경우 4개소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제공 / 115A, 115B타입의 경우 5개소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제공)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벽체 냉매배관(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115A, 115B 해당)에 해당되는 비용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115A, 115B 해당)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 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으며, 필요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용 실외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 일반형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용 실외기 상부에 2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ALTI 선택 시 침실2, 침실3, 침실4(115A, 115B 해당)에 벽걸이형 에어컨 배관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천정형이나 스탠드형 에어컨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및 상품모델	판매가격	비고
빌트인냉장고 + 김치냉장고	99A,99F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BC4S1AA1 (G))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BC3K1AA1 (G)) + 인출식수납장(W900)	7,300,000	상품구성 및 색상 변경불가
	99B,99C,99D, 99E,99G,99H		오브제컬렉션 냉장고(BC4S1AA1 (G))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BC3K1AA1 (G))	5,700,000	상품구성 및 색상 변경불가
	115A		오브제컬렉션 냉장고(BC4S1AA1 (G))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BC3K1AA1 (G)) + 인출식수납장(W600)	6,500,000	상품구성 및 색상 변경불가
	115B		오브제컬렉션 냉장고(BC4S1AA1 (G))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BC3K1AA1 (G)) + 인출식수납장(W400)	6,400,000	
	99A,99F	삼성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RR40A7(9/8)95AP (satin)) +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RZ24A5(9/8)G0AP (satin))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RQ34A7(9/8)45AP (satin)) + 인출식 수납장(W900)	7,200,000	상품구성 변경불가
	99B,99C,99D, 99E,99G,99H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RR40A7(9/8)95AP (satin)) +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RZ24A5(9/8)G0AP (satin))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RQ34A7(9/8)45AP (satin))	5,600,000	상품구성 변경불가
	115A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RR40A7(9/8)95AP (satin)) +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RZ24A5(9/8)G0AP (satin))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RQ34A7(9/8)45AP (satin)) + 인출식 수납장(W600)	6,400,000	상품구성 변경불가
	115B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RR40A7(9/8)95AP (satin)) +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RZ24A5(9/8)G0AP (satin)) +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RQ34A7(9/8)45AP (satin)) + 인출식 수납장(W400)	6,30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타입	삼성	삼성 식기세척기 (12인용 / DW60T7065SS)	870,000	택1
		SK매직	트리플게어 식기세척기 와이드 (14인용 / DWA-90R5B)	1,350,000	
		LG	LG DIOS 식기세척기 (12인용 / DUB22SB2)	1,160,000	
빌트인 전기오븐전기	전타입	SK매직	컨벡션 스팀 오븐 (EON-B401SA)	650,000	택1 아일랜드장을 선택 하여야만 전기오븐 선택가능함
		SK매직	IOT 스팀 오븐 (EON-B440SA)	1,050,000	
하이브리드쿡탑 / 인덕션	전타입	SK매직	2인덕션 + 1하이러이트 전기레인지 (ERAHF33L)	850,000	택1 가스 3구쿡탑 미제공하고 업그레이드함
		SK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4구 (IHR-BQ40E)	1,950,000	
주방 스마트TV	전타입	동영엔택	13" 음성인식 스마트 주방TV (DM-N330V)	800,000	택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가구패널 마감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해당금액은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LG 오브제 냉장고는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계약자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대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단종(성능개선, 디자인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 전기쿡탑 선택과 무관하게 주방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3) 붙박이 가구(주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및 상품모델	판매가격	비고
주방 대형팬트리장	99C, 99D, 99H	-	주방 대형팬트리장 (인출식 수납장)	1,900,000	
주방 아일랜드장	99A, 99F	ALT1	아일랜드장 (상판 MMA)	1,530,000	택1 무선충전 콘센트 포함
		ALT2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알파마요)	1,780,000	
		ALT3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실버셰이드)	1,780,000	
	99B, 99G	ALT1	아일랜드장 (상판 MMA)	1,800,000	택1 무선충전 콘센트 포함
		ALT2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알파마요)	2,100,000	
		ALT3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실버셰이드)	2,100,000	
	99C,99D, 99H	ALT1	아일랜드장 (상판 MMA)	1,300,000	택1 무선충전 콘센트 포함
		ALT2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알파마요)	1,510,000	
		ALT3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실버셰이드)	1,510,000	
	99E	ALT1	아일랜드장 (상판 MMA)	1,560,000	택1 무선충전 콘센트 포함
		ALT2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알파마요)	1,810,000	
		ALT3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실버셰이드)	1,810,000	



115A	ALT1	아일랜드장 (상판 MMA)	1,660,000	택1 무선충전 콘센트 포함
	ALT2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알파마요)	1,930,000	
	ALT3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실베셰이드)	1,930,000	
115B	ALT1	아일랜드장 (상판 MMA)	1,630,000	택1 무선충전 콘센트 포함
	ALT2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알파마요)	1,900,000	
	ALT3	아일랜드장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실베셰이드)	1,900,000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 시 아일랜드장 설치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측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 붙박이 가구(침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선택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침실1 드레스룸 가구	99A, 99F	ALT1	대형화장대 + 붙박이장 + 오픈형수납장	6,33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오픈형수납장	6,470,000	
	99B, 99G	ALT1	대형화장대 + 붙박이장 + 오픈형수납장	4,60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오픈형수납장	4,850,000	
	99C, 99H	ALT1	붙박이장 + 오픈형수납장	5,780,000	택1
		ALT2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오픈형수납장	5,920,000	
	115A	ALT1	대형화장대 + 붙박이장 + 오픈형수납장	6,85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오픈형수납장	7,000,000	
115B	ALT1	대형화장대 + 붙박이장 + 드레스룸(시스템가구)	850,000	택1	
	ALT2	대형화장대 + 붙박이장(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 드레스룸(시스템가구)	1,000,000		
침실1 붙박이장	99A, 99D, 99F	-	침실1 붙박이장	2,300,000	
	115A	-	침실1 붙박이장	2,320,000	
	115B	-	침실1 붙박이장	2,020,000	
침실2 붙박이장	99A, 99B 99F, 99G	-	침실2 붙박이장	1,280,000	
	99C, 99D, 99E 99H, 115A, 115B	-	침실2 붙박이장	1,350,000	99D, 99E 알파룸 가구 선택 시 설치 불가
침실3 붙박이장	99A, 99F	ALT1	드레스룸 + 시스템가구	2,320,000	택1
		ALT2	침실3 붙박이장	1,350,000	
	99B, 99C, 99D 99E, 99G, 99H	-	침실3 붙박이장	1,350,000	
	115A, 115B	-	침실3 붙박이장	1,420,000	115A 알파룸 가구 선택 시 선택 불가
침실4 붙박이장	115A	-	침실4 붙박이장	1,280,000	
	115B	-	침실4 붙박이장	1,350,000	
알파룸 가구 (침실1)	99B, 99G	-	알파룸 붙박이장 + 오픈형 수납장	8,000,000	알파룸 가변평면으로 알파룸 목도어 설치 불가
	99C, 99H	-	알파룸 붙박이장 + 오픈형 수납장	7,900,000	
알파룸 가구 (자녀방)	99D, 99E	-	침실2 드레스룸(시스템가구) + 침실3 드레스룸(시스템가구)	3,450,000	알파룸 수납강화형 가구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 설치 불가
	115A	-	침실3 드레스룸(시스템가구) + 침실4 드레스룸(시스템가구)	3,650,000	알파룸 수납강화형 가구 선택 시 침실3 붙박이장 설치 불가

- 붙박이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주택형별로 상이 할 수 있고,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옵션 선택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옵션은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타입별,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1 화장대에 설치되는 등기구는 화장대 크기에 따라 설치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벽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무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1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다운라이트, 화재감지기 등)
- 옵션 선택으로 알파룸이 변경될 경우 난방용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인접한 실과 연동하여 작동됩니다.
- 옵션 선택으로 알파룸이 변경될 경우 환기용 디퓨저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현관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오픈형 현관장	전타입	오픈형 현관장(PET마감) + 조명 + 신발살균기 + 에어브러쉬	1,500,000		
현관중문	전타입	ALT1	3연동 슬라이딩(그레이)	1,800,000	택1
		ALT2	3연동 슬라이딩(브론즈)	1,800,000	

- 현관 오픈형 현관장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에어브러쉬, 신발청소기는 설치시점에 이르러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을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유리 포함)으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마감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바	99A, 99E, 99F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알파룸)	2,07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알파룸)	2,070,000	
다	99B, 99G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알파룸)	2,20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알파룸)	2,200,000	
마	99C, 99D, 99H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알파룸)	2,05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알파룸)	2,050,000	
감	115A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알파룸)	2,57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알파룸)	2,570,000	



주방 마감	115B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알파룸)	2,530,000	택1
		ALT2	모던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각침실+드레스룸+알파룸)	2,530,000	
	99A, 99F	ALT1	알파마요(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700,000	택1
		ALT2	실버쉐이드(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700,000	
	99B, 99G	ALT1	알파마요(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650,000	택1
		ALT2	실버쉐이드(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650,000	
	99C, 99D, 99H	ALT1	알파마요(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850,000	택1
		ALT2	실버쉐이드(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850,000	
	99E	ALT1	알파마요(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600,000	택1
		ALT2	실버쉐이드(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600,000	
	115A	ALT1	알파마요(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250,000	택1
		ALT2	실버쉐이드(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250,000	
	115B	ALT1	알파마요(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820,000	택1
		ALT2	실버쉐이드(주방가구 상판+주방벽+조리대조명)	1,820,000	

거실 마감	99A, 99F, 115A	ALT1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1 CALACATTA EMPORIO 거실1개면+식당1개면)	7,350,000	택1
		ALT2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2 IMPERIAL IVORY 거실1개면+식당1개면)	7,350,000	
	99B, 99G	ALT1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1 CALACATTA EMPORIO 거실1개면+복도1면 전체(실외기실 도어 앞까지))	10,550,000	택1
		ALT2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2 IMPERIAL IVORY 거실1개면+복도1면 전체(실외기실 도어 앞까지))	10,550,000	
	99C, 99H	ALT1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1 CALACATTA EMPORIO 거실1개면+복도1면 전체(욕실2 앞까지))	10,550,000	택1
		ALT2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2 IMPERIAL IVORY 거실1개면+복도1면 전체(욕실2 앞까지))	10,550,000	
	99D	ALT1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1 CALACATTA EMPORIO 거실1개면+복도1면 전체(욕실2 앞까지))	12,850,000	택1
		ALT2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2 IMPERIAL IVORY 거실1개면+복도1면 전체(욕실2 앞까지))	12,850,000	
	99E	ALT1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1 CALACATTA EMPORIO 거실1개면)	3,830,000	택1
		ALT2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2 IMPERIAL IVORY 거실1개면)	3,830,000	
	115B	ALT1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1 CALACATTA EMPORIO 거실1개면)	5,000,000	택1
		ALT2	거실아트월 (세라믹패널 옵션2 IMPERIAL IVORY 거실1개면)	5,000,000	
	99A, 99F	ALT1-1	세라믹패널 (옵션1) + 디자인패널 (거실1개면+복도1개면+거실창면(디자인패널))	6,720,000	택1
		ALT1-2	세라믹패널 (옵션2) + 디자인패널 (거실1개면+복도1개면+거실창면(디자인패널))	6,720,000	
99B, 99G	ALT-2	디자인패널 (복도1개면 전체(복도창까지) + 복도창면 + 거실창 2개면)	1,530,000	택1	
	ALT1-1	세라믹패널 (옵션1) + 디자인패널 (거실1개면 + 복도 1개면 전체(디자인패널) + 거실창면(디자인패널))	5,870,000		
99C, 99H	ALT1-2	세라믹패널 (옵션2) + 디자인패널 (거실1개면 + 복도 1개면 전체(디자인패널) + 거실창면(디자인패널))	5,870,000	택1	
	ALT-2	디자인패널 (거실1개면+ 복도 1개면 전체 + 거실창면)	1,180,000		
99D	ALT1-1	세라믹패널 (옵션1) + 디자인패널 (거실1개면 + 복도 1개면 전체(디자인패널) + 거실창면(디자인패널))	5,950,000	택1	
	ALT1-2	세라믹패널 (옵션2) + 디자인패널 (거실1개면 + 복도 1개면 전체(디자인패널) + 거실창면(디자인패널))	5,950,000		
99E	ALT1-1	세라믹패널 (옵션1) + 디자인패널 (복도 1개면 + 복도 2개면(디자인패널) + 거실창 2개면(디자인패널))	5,200,000	택1	
	ALT1-2	세라믹패널 (옵션2) + 디자인패널 (복도 1개면 + 복도 2개면(디자인패널) + 거실창 2개면(디자인패널))	5,200,000		
115A	ALT1-1	세라믹패널 (옵션1) + 디자인패널 (거실1개면 + 복도1개면 + 거실창면(디자인패널))	9,500,000	택1	
	ALT1-2	세라믹패널 (옵션2) + 디자인패널 (거실1개면 + 복도1개면 + 거실창면(디자인패널))	9,500,000		
115B	ALT1-1	세라믹패널 (옵션1) + 디자인패널 (거실1개면 + 복도1개면 + 거실창면)	1,190,000	택1	
	ALT1-2	세라믹패널 (옵션2) + 디자인패널 (복도1개면 + 거실창2개면(디자인패널) + 식당1개면(디자인패널))	6,200,000		
115B	ALT1-2	세라믹패널 (옵션2) + 디자인패널 (복도1개면 + 거실창2개면(디자인패널) + 식당1개면(디자인패널))	6,200,000	택1	
	ALT-2	디자인패널 (복도1개면 + 거실창2개면 + 식당1개면)	1,500,000		

- 거실 부위 세라믹패널 또는 거실/복도 패널마감 옵션 선택 시 복도 일부 면에 기본 설치되는 디자인패널을 미제공하고 선택 자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주택형별로 적용여부 상이함)
- 거실 아트월 (세라믹패널) 및 거실/복도 패널 마감 옵션 선택 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세대 (디자인월 및 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쪽 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패널 본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욕실 특화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욕실 복합환풍기	전 주택형	복합환풍기 (욕실1 + 욕실2)	870,000	
세면대 하부장	전 주택형	세면대 하부장 (욕실1 + 욕실2)	1,350,000	
욕실 조명특화	전 주택형	욕실장간접조명 + 센서미등 (욕실1 + 욕실2)	530,000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 주택형	비데일체형 양변기 (욕실1 + 욕실2)	750,000	욕실1 분리형비데 미제공하고 업그레이드 함

- 복합 환풍기 미선택 시 욕실 안쪽에 환기 디퓨저가 설치되며, 복합 환풍기 선택시 욕실 배기팬은 적용되지 않음 (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8) 조명&디밍제어 시스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구성내용	판매가격	비고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99A, 99F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170,000	
	99B, 99G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200,000	
	99C, 99D, 99H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090,000	
	99E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130,000	
	115A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650,000	
	115B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850,000	
주방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99A, 99E, 99F	주방 우물천장 신설 + 주방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3,500,000	
	115A	주방 우물천장 신설 + 주방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 천정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020,000	
침실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99A, 99F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2,270,000	12단계 밝기 / 색온도 제어조명 테두리 간접조명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99A, 99F 알파룸 옵션 적용 이외타입 알파룸 옵션 미적용
	99B, 99C, 99D, 99E, 99G, 99H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	1,780,000	
	115A, 115B	특화조명 + 음성인식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침실1+침실2+침실3+침실4)	2,270,000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설치세대 천장 시트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직간접 조명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이 시트 패널로 마감되며, 우물 천장내 직부등이 삭제되고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으로 설치됨. 설치되는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상부 간접조명, 하부 직부형 조명으로 구성되며, 하부 직부형 조명은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조명 옵션 선택 세대는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와 우물천장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에 설치되는 색온도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전구색-주광색)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함(거실에 설치되는 디밍제어시스템은 색온도 조절기능은 없음)

■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에 준합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II 공사비	우리은행	1005-804-399204	디엘이앤씨(주)

- 추가선택품목(II)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대금 입금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여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별도 안내예정이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 : 3901동 0104호 홍길동 → 39010104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 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추가선택품목(II)이하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비, 간접비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접수일정 및 선택방법 등)은 공급계약 체결 후 별도로 입주 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상품 (전자제품 포함)의 서비스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및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추가선택품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 (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제품의 모델 및 사양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음(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정구하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모델, 상품구성,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내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1) 문	문틀(상부마감판, 문선, 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욕실문틀 하부 썸,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내·외부 P.N창호, 주방 터닝도어,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창호
2) 바닥	강마루(광폭), 결레받이, 현관바닥재(바닥재, 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3)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시멘트벽돌,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4)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정, 등박스, 반자돌림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무선AP
5)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욕실손,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 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6)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처리기), 벽타일, 주방TV폰,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7)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8)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99A	99B	99C	99D	99E	99F	99G	99H	115A	115B
(마이너스 옵션 금액)	36,325,665	36,811,946	36,623,174	36,455,872	36,595,049	36,325,665	36,811,946	36,623,174	41,541,490	41,718,210



- 상가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가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상가 마이너스옵션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체수급 사정, 품질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지정 계약 기간에만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 및 변경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 상가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주체에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계약자는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소화기(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랜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계약자는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랜지후드, 상부장 등)를 사업주체 (민간참여 시행자 포함)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하고, 자동식소화기 설치요청을 민간참여 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식소화기 미설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가스쿠팡 설치시 과열방지장치가 부착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랜지후드, 상부장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 하여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 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 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너지 절약기준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 (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 마감재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 자재 (대리석, 타일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재를 위해 별도의 마감 (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 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가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확장형으로 설치되며 확장형의 내, 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제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 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서 정한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주체에 제출함으로써 마이너스 옵션과 관련된 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약속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입주금 납부 안내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단, 연례로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가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 등의 사유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업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업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가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IX 기타 계약자 안내

1.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입주예정일 및 부대복리시설 안내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부여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피트니스, G/X룸, 실내스쿠르프런칭장, 라운지카페, 키즈라운지(다함께돌봄센터), 독서실(난녀), 게스트하우스, 그린카페,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



4.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제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제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외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p>녹색건축 예비인증서</p> <p>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파인동원2 A-5011, 공동주택 건축공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신동읍(신동)3리12번길 15-1 (신동3리12번길 15-1) 건축면적: 1,502.10㎡, 연면적: 15,021.00㎡, 용적률: 100.00%, 건축연도: 2022년 10월 27일</p> <p>인증 등급: ☆☆☆</p> <p>한국부동산원장</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파인동원2 A-5011, 공동주택 건축공사 2. 시·군·구: 경기도 화성시 신동읍(신동)3리12번길 15-1 (신동3리12번길 15-1) 3. 대지면적: 1,502.10㎡, 연면적: 15,021.00㎡, 용적률: 100.00%, 건축연도: 2022년 10월 27일</p> <p>인증 등급: ☆☆☆</p> <p>한국부동산원장</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1. 건축물명: 파인동원2 A-5011, 공동주택 건축공사 2. 주소: 경기도 화성시 신동읍(신동)3리12번길 15-1 (신동3리12번길 15-1) 3. 건축면적: 1,502.10㎡, 연면적: 15,021.00㎡, 용적률: 100.00%, 건축연도: 2022년 10월 27일</p> <p>인증 등급: ☆☆☆</p> <p>한국부동산원장</p>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 기관별 등의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 통로 차로 : 6.5m 이상 일반 차로 : 6m 이상	2.7m 이상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이상

6.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7812023-101-0000500 호	180,010,796,7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권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변사용권사 포함) 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택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7.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상 호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주)준영이앤씨	(주)사람앤수엔지니어링	(주)더힐이앤씨
금 액	3,217,250,300	555,394,400	59,780,340	107,8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8. 사업주체 현황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번길,48(탄방동)
법인등록번호	131111-0645647	110111-7736808	160111-0003121



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48,480,929,965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48,699,552,000	공사비	기계설비	위생기구공사	8,545,809,000						
	기간이자	8,895,747,331			용접공사	-			공조설비	2,317,508,000						
	그밖의 비용	18,722,466,170			조적공사	4,685,346,000			난방설비공사	4,655,707,000						
	필요적 경비	9,000,403,911			미장공사	4,441,560,000			가스설비공사	869,065,000						
	계	185,099,547,376			단열공사	1,061,582,000			자동제어 설비공사	744,913,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2,254,844,000	방수, 방습공사			1,964,536,000	공사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특수설비공사	372,457,000		
		흙막이공사			-	목공사			3,660,626,000				전기설비공사	14,762,037,000		
		비탈면보호공사			21,340,000	가공공사			4,929,643,000				정보통신공사	6,246,651,000		
		옹벽공사			189,050,000	금속공사			4,246,326,000				소방설비공사	7,808,314,000		
		석축공사			-	지붕 및 흙통공사			48,808,000				승강기공사	1,830,630,000		
		우수, 오수공사			499,835,000	창호공사			7,016,251,000				이윤	일반관리비	7,808,314,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073,784,000					계	193,636,878,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95,032,000	타일공사			2,745,470,000				간접비	부대비	설계비	3,834,980,000
		도로포장공사			554,259,000	돌공사			4,332,124,000						감리비	4,218,545,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202,082,000	도장공사			1,891,324,000						일반분양시설 경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927,359,000	분담금 및 부담금	분담금 및 부담금	20,700,885,502								
		조경공사	8,339,085,000	수장공사	3,270,159,000		보상비	-								
		부대시설공사	518,882,000	주방용 가공공사	5,430,056,000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34,847,779,800								
		공통가설공사	4,075,369,000	잡공사	2,229,219,000	계	67,756,762,064									
		가시시설물공사	7,077,083,000	급수설비공사	1,433,957,850	그 밖의 비용	그 밖의 비용	38,355,267,559								
지정 및 기초공사	2,928,118,000	급탕설비공사	1,115,300,550	합계	484,848,455,000											
철골공사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637,314,600													

· 흙막이 공사비용은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됨.

10.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 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148,480,929,965	건축비	261,464,440,699					
택지비 가산항목	법정 택지이자	8,895,747,331	건축비 가산항목	법정초과복리시설 건축비	2,726,001,615			
	취득세	취득세		5,939,237,198	구조형식가산	지상	5,942,165,583	
		교육세(취득세)		593,923,719	주택성능등급		3,961,443,722	
	재산세	재산세		623,619,905	인텔리전트설비	친환경주택건설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	3,871,871,456
		교육세(재산세)		124,723,981		홈트위크공사비	6,816,030,312	
		과세특례		436,533,934		초고속특등급	2,461,710,240	
	등기수수료	보수료		23,552,136		에어컨냉매배관설치	5,289,787,296	
		인지세		348,880		기계환기설치	4,177,322,928	
	말뚝박기 공사비	1,591,854,383		전기차충전	426,456,800			
	암석지반 공사비	9,917,972,219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1,904,191,008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7,212,639,571		사업승인조건	입면마감특화(커튼월)	-		
	택지와 관련된 경비	지역난방부담금			법정초과조경	-		
				분양보증수수료		778,286,598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X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82호, 2022.06.30.)로 승인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8차), 개발계획(20차) 및 실시계획(20차) 변경”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화성동탄(2)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공처리시설(케이비 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민간분양·공공분양·행복주택·국민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증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 및 화성동탄2택지개발지구(신주거문화타운)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



- 입주제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 사업자의 설치계획 및 기타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연립주택(B14), 주상복합(C28) 계획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근린공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신리제2저수지(직선거리 약 0.3km)가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으로 전기공급시설(전전소 직선거리5.3km), 위치 있으나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으로 물류창고(직선거리 약 1.3km)가 위치하여, 시설물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 교통혼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동탄일반산업단지(직선거리 약 4.4km)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골프장(직선거리 약 0.9km)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인근 동탄JC측에 화성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거리 약4.4km, 송동 681-246, 일일 16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 건식 사료화 및 일일 155톤 규모의 음식물 협기성 소화설비)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청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변 경관녹지로 둘러 쌓여 있어 야생동물이 출몰 할 가능성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903동(옹벽과의 거리 6m), 3904동(옹벽과의 거리 7m), 저층 세대는 전면 옹벽으로 인한 일조 및 조망 간섭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출입구 1개소가 계획(주출입구 외 별도 출입구는 설치 되지 않음)되어 있으며, 기존 현황도로 여건 등에 따라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비실은 주출입구에 배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물, 주택전시관의 게시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당초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주택전시관에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홍보물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확인사항**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테리어,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주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해야 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혐오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권리**

- 청약 시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물, 주택전시관의 게시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당초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주택전시관에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홍보물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확인사항**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테리어,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주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해야 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혐오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및 설계 관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예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 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분양, 입면, 환기용량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 내 항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단지 외부 관련**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출차주의 경보를 포함),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체대가 속한 동, 층 및 항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관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내타입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변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홈페이지, 분양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합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교육 관련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신설 예정인 (가칭)동탄18초(2025년 9월 개교 예정, 직선거리 약 0.9km)에, 중학교는 동탄2-2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교는 화성 시 기존 고등학교 및 개교 예정인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단,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계획에 따름)
- 2025. 9월 (가칭)동탄18초 개교 전까지 본사업지의 초등학교는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통학대책(통학버스)을 통하여 세정초(직선거리 약 2.0km)에 임시배치할 계획입니다.
-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결과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변화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설립지연 시 입주시기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제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 등은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할개발본센터 설치 의무대상이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이거나 초등돌봄 수요가 없는 등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국공립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련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영구저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종 출입구 계시판 입주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된 채 공급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연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당청자는 계약 전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를 위하여 일부 구간 조경 식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중앙광장, 그린카페,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 실내스키링크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 조경등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 진입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체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연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중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1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는 간판 설치 시 관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화성시고시 제2019.10.30.관계부서의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터리어 계획의 사유로 사업승인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호·라인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동 전후 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물담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나 계약된 해당 세대는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 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의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리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하저수조 및 기계실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사업승인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설치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정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만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도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이동하여 설치 할 수 없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입구를 통하여 단지내 진입하는 통학차량의 경우 진입 후 회전차(교통신)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동,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기구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당청 후 반드시 주택전시관내 모형도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출차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1층~지하2층 및 지상1층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그린카페,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상가)이 인접이 인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안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외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생안테나, 웨더스테인션 안테나, 피리칭,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 3901, 3903, 3904, 3905, 3906, 3907, 3908, 3910, 3911, 3912, 3913등에 설치되며 본 공사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발전기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전동 주동 옥상에 설치되며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인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인이 부담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3902동, 3904동, 3908동, 3910동, 3913동), 지하층(3902동, 3904동, 3911동)
-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 장비는 본공사 시 동호수 변경 따른 변경과 수량, 위치,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등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기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902동, 3908동, 3909동 4호 조합 등의 경우 E/V 1기가 설치되며 인승 및 속도가 타 호기에 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16인승 → 18인승, 105M/min → 120M/min)되어서 시공됩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구조에 따라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 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옥상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전사관 내 단지모형은 조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정, 수경시설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정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정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벤펠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벤펠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의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의 주출입구가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요 높이 이상의 차양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각 동당 1개소씩, 총 13개소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공급설비(한전패드 및 맨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무기가 입주인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차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웃집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웃집 문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탈로그나 주택전사관 내 단지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모든 주차장은 지하에 위치합니다. 근린생활시설(상가)주차장은 지하에 위치하며, 장애인주차 1대, 일반원주차 3대가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마감은 석재마감(층수 및 위치 상이함)과 수성페인트 도로로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등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외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상의 필로티는 동별 라인마다 위치와 높이가 상이하며, 3902동 2호와, 3911동 2호, 4호, 5호는 2개층 필로티입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외 별도 출구(차량, 보도)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외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물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3902동, 3908동, 3909동 주변에는 주민공동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3902동 및 3903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전기실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냉매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3902동 3903동, 3904동, 3907동은 지하주차장 내부 램프와 인접하여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기계실/전기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전기차충전시설 포함된 대수임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M)등급 VII이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197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3903, 3904동은 용벽과 단지 거리가 근접하여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903, 3904동 사이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 입실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910동 1~4호 세대는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의 동선이 타 동에 비하여 길며 각 동마다 지하주차장이 1개층 또는 2개층 다르게 구성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 들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카페, 중앙광장, 부대시설 등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소음, 사생활 보호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스카이라운지는 390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접근 할 수 있습니다. 3901동 최상층(3~6호 세대), 스카이라운지 최상층은 소음 발생 가능성 존재 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층 분양서비스 시스템 특허를 통하여 각 동 1층 세대 앞 조정구간을 분양 받으신 세대는 해당 토지를 개인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단지 내 유아놀이터가 3911동 남사측, 3912동 남측으로 1개소가 위치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3904동 남측과 3905동 북측 및 3906동 서측으로 1개소, 3908동 남사측에 1개소, 3912동 북측에 1개소가 위치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902동, 3903동, 3908동 사이에 중앙광장과 그린카페 및 바닥수 등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3902동, 3908동, 3909동 주변에는 주민공동시설 냉난방용 설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동은 해당 시설 냉난방용 설비기 설치로 인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3913동 북측에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설비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위치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902동, 3903동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냄새, 구연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음극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시설표시)를 위한 음극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26조의5(음극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동싱장충격기 설치 및 자동제세동기를 각 동 지상1층 1대, 경비실 1대, 관리사무소 1대, 총 15대 설치 예정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벽,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들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제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직접 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장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바닥에는 별도 마감재(강마루)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보조장방 및 실외기실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홀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적용부위 내용은 평형 타입별 평면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시공 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은 강화 및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 등)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전기분전함 및 통신단자함, 급수·급탕 계량기, 월패드, 각종 스위치 등의 설치로 해당부위의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와 선반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제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직접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확장 부위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입주자의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 하향식 대피 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지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홀통 및 드레인의 위치 및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을 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품에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설치 되는 세대분전함(전기/통신) 및 전기 관련 기기등의 위치, 타입, 수량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 검토, 시공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 위탁합니다.
- 욕실 스프리클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후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홀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이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단지 내 조정,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주택전시관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해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정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관청과의 협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단지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 위탁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전원은 세대가 아닌 공용 전기요금으로 부과합니다.
- 단위세대 실벽 가(강풍,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벽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등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 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동 배치 특성에 따라 대부분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시공됩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사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 CS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주민공공시설 내 창고 또는 다목적실 공간을 통한 CS센터로 2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정(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명,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나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방문 및 주택전시관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으나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소방 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의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공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보도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인이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정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인·허가사항이다.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의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목, 조정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용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공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대지내 보행통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 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접(온전적 및 보조적)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피트니스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기계실, 전기실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 실외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 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3902동, 3904동, 3908동, 3910동, 3913동 옥상에는 TV/방송안테나가 3901동 옥상에는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설치 되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방범용 동체 감지기는 지상1층,2층(필로티 포함) 설치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 색재, 입면(창호 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일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제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별부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 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층 엘리베이터 홀 마감사양이 서로 상이합니다.
- 각 동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등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리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실외 노출 복도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의 옥배수 배관은 실외 노출 복도 천장속 공간에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천장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휴게공간은 의기에 면해있어 우천시 비 들이침과 겨울에 눈이 쌓일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주택전시관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월 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전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욕실 /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사시장은 이중 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 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 성능(TDR값 제외)은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 배수 입상관이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별 입상관 위치도 상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방식이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 및 보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커튼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 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정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 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 배관의 사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자재 내용은 평형별, Type 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박스 위치와 높이, 사이즈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 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 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길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및 가구의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설치 시 설비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져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2층 이상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천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부대복리시설(주인공용시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 및 필로티 상부층이 최하층일 경우 해당세대의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이 최하층일 경우 해당세대의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나, 1층에 세대가 있는 2층의 경우는 설치가 됩니다.
- 타입별로 세대분전반, 통신 단차함, 월 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합니다.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어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등 천장에 구조를 위한 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 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 창호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 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전시관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구 등 은폐부위 및 빌트인가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115A, 115B 해당)의 외기면 벽체와 만나는 내부 벽체 모서리에는 도배하지 않음을 위한 줄눈이 시공됩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및 욕실도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목 창호의 하드웨어(경첩, 스토퍼, 등)와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우물천장의 깊이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거실아트월(디자인월), 디자인패널 등 패널류의 마감재 나누기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배지, 등선, 복도쪽, 수납장 등은 세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관, 욕실, 발코니 타입마감에 의한 줄눈 나누기는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타일 자재의 컬러나 문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물당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 단차함 및 전기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인조대리석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탠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115A, 115B 해당)에는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실외기실에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박스가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일부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 세대, 하부 1개 층 세대는 개폐 시 알람 경보가 울리게 됨)
- 타일 및 마감에 의한 줄눈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 패드, 전기 분전반, 통신 단차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1조) 변경으로 인해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 벽체에 매립되고, 분전반 커버는 노출 시공됩니다. 위치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장 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추후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 시 매립 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보관 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 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 분전반 및 전열 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 형성)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러켓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 식탁용 팬던트는 제공되지 않으며, 식탁용 전등은 다운라이트로 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냉장고 등 가전용 콘센트 위치는 각 타입의 냉장고장 위치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일부 타입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장비는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양면기 배수배관은 배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호칭경 75mm 저소음관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급수급탕배관은 1대1 방식의 PB+CD 이중관매립배관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다용도실에 가스배관 인입을 위해 커튼박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층 이상의 세대 발코니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1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되며 2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시각경보기, 비상조명등은 주택전시관용 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는 총 800세대(1회차 437세대) 중 아래 표와 같이 일부 1층 세대(14세대 / 1회차 11세대)에 한하여, 장기 임대방식(70년)으로 "1층 세대 전용정원"을 공급합니다. (각 타입의 동배치 등에 따라 '1층세대 전용정원'의 구조,면적 등은 세대별로 상이 할 수 있음)

타입	동	호수	임대료 (70년 임대)	임대료 납부시기
99F	3901	102	₩12,600,000원	입주지정기간 내 (아파트 잔금납부 시)
99F	3901	103		
99F	3903	102		
99F	3904	102		
99F	3905	102		
99F	3910	102		
99F	3913	102		
99F	3913	103		
99G	3901	101		
99G	3903	101		
99G	3904	101		
99G	3905	101		
99H	3901	104		
99H	3907	102		



- 1층 전용정원 범위안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해당타입 정원의 구조, 디자인의 형태, 재질, 마감자재, 마감사양, 색채 등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해당타입의 동배치에 따라 난간대, 석재 설치 범위, 사이즈, 색상, 형태 등이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층 전용정원 내 설치되는 지붕의 높이, 형태, 뒷받침 나무의 종류, 높이 등 인접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층 전용정원에 조성되는 나무, 지붕, 관리규약에 허용되는 설치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이삿짐 사다리 이용불가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전용정원은 수분양자의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권리 등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며, 입주인 및 타인 등 출입을 제한합니다.
- 완성된 식목 및 다과류의 취식, 유산소 운동, 유실수 식재, 원예작물 및 야채류의 재배, 독서, 일반적인 담소 행위 등 허용되나, 취사, 반려동물의 사육 및 동반, 방뇨, 세탁물 건조, 물품의 야적, 도박, 음주, 흡연, 고성방가, TV시청, 음향기기사용, 미용양육 저해행위와 악취를 풍기는 행위 등 입주인의 생활에 침해될 수 있는 일체행위는 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1층 전용정원 관리규정 위반 시 경-중을 고려하여 1차 경고하되, 계속하여 위반 시에는 기 설치된 시설물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철거한 후 일반 조정시설로 원상 복구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의 관리비 부과 시 병행 부과하고, 1층 전용정원세대의 잔여기간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향후 1층 전용정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불가함)
- 본 아파트 800세대 중에서 각 동의 1층 14세대의 세대 전면과 연결한 조정면적(각 타입별 해당세대의 조정면적은 실제 시공 시 지면지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데크, 파고라, 유실수, 잔디를 식재하는 등 조경을 특화하여 1층 전용정원을 조성한 다음, 합법적인 장기임대차방식으로 전용정원의 관리 권한을 1층 수분양자에게 부여합니다.
- 1층 전용정원의 임대기간은 70년으로 정하고 임대료는 일금 일천이백육십만원(₩12,600,000원)으로 하며,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반환이 불가하며, 소멸성으로 임대기간 경과에 비례하여 차감됨)
- 1층 전용정원 임대료는 아파트 공급대금의 일부로서 잔금납부(입주) 시 별도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은 입주를 거부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행위자(주식회사) 화성동탄경남하동귀농귀촌주택관리부동산투자(사)는 1층 전용정원세대 임대료를 분양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차후 수분양자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고 본 아파트 입주인(수분양자) 전부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본 아파트 입주인(수분양자)전부가 임대수익자의 권리를 갖습니다.
- 1층 전용정원세대 수분양인이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대표회의 통제하에 자기부담으로 기시설물을 철거하고, 일반조정시설공사를 하여야하며, 이 경우 기납부한 임대료를 상환받지 못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층 전용정원 수분양자(임차인)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사용권을 해지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약의 절차에 따릅니다. (이러한 경우 관계법에 따라 1층 전용정원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층 전용정원 세대의 관리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시 입주예정자에게 관리규정 등 임대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전부 인계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인계한 사실을 명시합니다. 또한 계약서 사본 1부를 동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층 전용정원세대의 매매 및 임대행위에 관여하지 않음)
- 전용정원에 별도 전기관련시설(조명, 콘센트 등)은 미설치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층 전용정원 세대의 정원은 수전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주자모집공고 등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들은 주택전시관 내 1층 전용정원 관리규정(예시)이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배포되는 1층 전용정원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일반형 785대, 확장형 400대, 경형 130대, 장애인 48대, 전가차 75대(1,438대) 이용 시 주동로의 진입이 불편한 세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므로 문의 사항은 주택전시관에 비치되어있는 관련 도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까지 차량 동선이 단지 출입구를 통하여 진입하므로 입주자 차량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출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3902동, 3903동 사이)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스쿠르판프런츄상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외부에 불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펜스, 각종 계시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지상 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 협의회(가정)와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정)의 협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확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고, 주차확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가차 주차구역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중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에어컨의 경우 실빌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점검시 연료펌프 성능시험으로 인해 냄새, 매연, 소음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주택전시관내 단지모형도(단지 조정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축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 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단지, 단지모형,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홈페이지 :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홈페이지(<http://www.elife.co.kr>)

■ 주택전시관 위치 및 분양 문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1522-7002)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